

대통령령 제16,740호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김대중인

2000년 3월 2일

국무총리 박 태 준

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이 현 재

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

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의2제1호중 “리터당 630원”을 “리터당 600원”으로 하고, 동조제2호중 “리터당 155원”을 “리터당 137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(적용례)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

◇교통세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◇

최근 국제원유가가 상승하여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(交通稅)의 세율을 현행 리터당 630원에서 600원으로 30원(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·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39원)을 인하하고,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(交通稅)의 세율을 리터당 155원에서 137원으로 18원(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·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23원)을 인하하여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계비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안정(物價安定)을 도모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대통령령 제16,741호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김대중인

2000년 3월 2일

국무총리 박 태 준

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이 현 재

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

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별표 1 제7호다목 등유
리터당 43원

◇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◇

최근 국제원유가(國際原油價)가 상승하여 등유가격의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리터당 60원에서 43원으로 17원(특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22원)을 인하하여 등유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계비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 - 35호
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
 제9조의 규정에 따라 「2000년 해외석유개발
 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」을
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0년 3월 3일 산업자원부 장관

2000년 해외석유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

1. 2000년 해외석유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

사업명	2000년 예산	보조대상사
○ 해외석유개발조사	350백만원	해외석유개발사업자
○ 정보조사사업	30백만원	한국석유공사
합 계	380백만원	

2. 보조기준

가. 용어의 정의

- (1) “해외석유개발조사사업”이라 함은 해외석유(가스 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계약 등을 체결하기 직전일까지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기술적·경제적 타당성 및 투자환경 등을 조사·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- (2) “해외석유개발정보조사사업”이라 함은 해외석유 개발조사사업에 활용할 기초자료 및 정보의 축적·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해외석유개발 정보자료를 수집·배포하는 것을 말한다.

나. 보조대상자

- (1) 해외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중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한국석유공사의 장에게 해외석유개발사업 참여계획서를 제출한 자
- (2)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

다. 보조대상사업비

- (1)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선정 및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중 (조)광권 취득 등에 관한 계약이나 지분양도계약 등의 체결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비용
 - 가) 조사대상지역 및 광구에 대한 기존자료의 열람·구입·처리·해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
 - 나) 광구획득을 위한 기술적·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직접비용. 단, 해외자원개발 계획신고를 한 사업과 단위 사업비 규모가 2000년도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은 제외한다.
 - 다) 조사대상사업의 시료분석 및 시험을 위한 제경비

- (2) 해외석유개발정보조사사업에 관련된 비용
- (3)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

라. 보조비율

보조대상사업비의 80%이내 단, 한국석유공사는 100%이내

3. 보조대상사업의 관리 및 보조금 지급

가. 보조대상사업의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등을 해외 자원개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와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석유공사(이하 “사업관리기관”이라 한다)의 사장에게 위탁한다.

나. 보조대상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

- (1) 보조대상사업의 신청은 2000년 11월 30일까지로 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.
- (2) 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2000년 1월 1일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. 단,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사업에 지급된 비용은 동사업비 지급사실을 확인후 적용한다.

(3) 보조대상사업의 사업참여계획서,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등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다.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20일까지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(시행일)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이 공고 시행전 산업자원부에 해외석유개발조사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은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해외석유개발사업 참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- (폐지공고)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-51호(99. 2. 22)는 이 공고 시행일부터 폐지한다.

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 - 46호
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「2000년 해외석유개발사업 자금의 용자집행계획 및 용자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0년 3월 일 산업자원부 장관

2000년 해외석유개발사업자금의 용자집행계획 및 용자기준

1. 2000년 해외석유개발사업 자금의 용자집행계획

사업명	2000년 예산	용자대상사
○ 해외석유개발사업	86,872백만원	해외석유개발사업자

2. 용자기준

가. 용자대상기관 및 용자금 실수요자

(1) 용자대상기관 : 한국석유공사(석유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받아 용자금 실수요자에게 대출)

(2) 용자금 실수요자 : 석유개발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산업자원부에 신고한 자(현지법인을 통한 사업 수행자 포함)

나. 용자조건 (아래표참조)

다. 기타사항

○용자대상사업의 원리금 상환·감면·특별부담금 징수 및 기타 용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-26호(2000.3.15) 「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기준」참고, 동 고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고시에 따른다.

부 칙

- (시행일)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(폐지공고)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-59호(99.2.24)는 이 공고 시행일부터 폐지한다.

대상사업	대상사업비	용자기간	용자비율	이자율
탐사사업	석유광구에서 석유부존의 확인을 위한 물리탐사 및 탐사·평가시추비 등의 사업비	15년이내(거치기간 포함) ※거치기간은 상업적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함	탐사사업비의 60~80%이내 석유정제업자는 20%우대지원(석유공사100%)	용자 및 대출 : 연리 5.5%
개발사업	석유부존 확인광구 또는 개발단계 유전의 광권취득비 및 지분 매입비와 생산시설·부대시설 건설비 등	10년이내 (거치기간 5년 이내)	개발사업비의 50%이내 석유정제업자는 20%우대 지원(석유공사100%이내)	용자: 연리45%(석유공사 직접사용분은 연리55%) 대출: 연리55%
생산유전 참여사업	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유전의 지분 매입비	10년이내 (거치기간 5년 이내)	생산유전 참여 사업비의 50% 석유정제업자는 20%우대 지원(석유공사100%이내)	용자: 연리45%(석유공사 직접사용분은 연리55%) 대출: 연리55%
생산유전 운영사업	생산유전의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설비 건설 및 추가 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비	10년이내 (거치기간 5년 이내)	석유공사의 생산유전운영사업비중 부족액의 100%이내	용자 및 대출 : 연리55%